



축산업등록제 대응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한지태

협회 차도2팀 과장대리

지난 5월 12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는 축산업등록제와 관련하여 지역 지도자와 낙농가의 대응활동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성과를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 상반기 내로 지역 형편에 따라 등록을 완료키로 결정하였다. 사실상 지난 3년여간의 길고긴 축산업등록제 대응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리고 싶다.

타 축산단체와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와 더불어 2007년에 도입예정인 양분총량제, 2011년의 가축사육 두수 총량제 등 앞으로 제기될 각종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낙농 뿐만아니라 축

산업계 전체가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금번을 계기로 축산업등록제의 활동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 낙농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축산업등록제, 3년간의 대응활동

축산업등록제는 “축산물 안전”과 “가축방역”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진정한 의미를 살려나기 위해 농가의 이해와 참여가 관건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당초 등록대상 농가 범위를 분뇨발생량과 질병 발생·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유독 젖소만 100㎡이상(10두이상, 94%)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장비 구비, 두당 사육면적 확보, 강력한 처벌조항, 개인

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이전부터 농가반발이 거세었으며, 2002년 9월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농가대표 반발에도 일방적 통과, 2003년 8월 농림부 주최 지역설명회에 무산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축산업등록제를 일방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가 현실을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농가 민원과 지역여론에 따라 축산업등록제는 이중규제임을 지적하면서 등록유예와 더불어 무허가축사 양성화, 두당 사육면적 확보에 따른 피해방지, 처벌조항 완화, 근본적인 분뇨자원화 대책 등 사전대책 마련을 협회방침으

로 결정하고, 도지회 및 낙우회 등과 지역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록거부 운동 및 낙농가 서명활동(6,966명 서명) 등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축산업등록제 대책 소위원회 구성·운영, 축산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문서전달(관련기관), 월기대회 등을 통해 낙농가의 여론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다.

특히 2005년에 새로이 구성된 협회내 축산업등록제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이용우 충남도지회장)에서는 등록유예와 함께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 등 사전대책 마련을 중점으로 건폐율 상향에 따른 벌금 완화, 썬라이트 축사 등 가설건축물 범

주요 활동경과

- 2002년 9월 13일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농가대표 강력 반발
 - 2003년 6월 25일 축산업등록제 공청회, 농가반발
 - 2003년 8월 농림부주최 축산업등록제 지역설명회 무산
 - 2003년 9월 2일 청년분파위, 축산업등록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 2003년 9월 17일 국회의원 정장선의원과 간담회 개최
 - 2003년 9월 18일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제출
 - 2003년 11월 7일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축산관련 민간위원 불참
(시행령·시행규칙 일방적 통과)
 - 2004년 1월 6일 등록거부운동 선포 및 축산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 2004년 3월 29일 축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활동 전개
 - 2004년 8월 16일 전국낙농인총궐기대회 개최
 - 2004년 9월 9일 '낙농회생 대책마련 요청' 국회 청원서 접수
(국회의원 26명, 낙농가 서명부 총 6,966명)
 - 2004년 9월 13일 당정협의회 개최(건폐율 상향조정 결정 등)
 - 2005년 3월 7일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표자회의 개최(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 2005년 3월 9일 제1차 축산업등록제 대책 소위원회 개최
(무허가축사 양성화 중점추진 결정)
 - 2005년 3월 11일 축산업등록제 시행과 관련 농가 요구사항 문서 전달(농림부)
 - 2005년 4월 6일 제2차 축산업등록제 대책 소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대표단, 농림부 축산정책과 방문
 - 2005년 5월 11일 제3차 축산업등록제 대책 소위원회 개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과 간담회 개최
 - 2005년 5월 12일 제2회 협회 이사회 개최(축산업등록제 등록 의결)
- ※ 20여차례 성명서 발표 및 지역 도지회·낙우회 공문 발송



위 확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농림부 정책당국자와 심층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와 관련 우리협회를 비롯한 타축산단체와 더불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2005년도에 들어 낙농가 등록률이 저조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등록농가에 대한 지방비보조 지원사업 제외 조치를 실시하는 등 농가 불이익 조치가 단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다수의 농가들이 협회방침에 따라 끝까지 동참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대응활동의 결실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단 축산업등록제 문제는 양돈, 한우, 양계 등 타 축종의 찬성속에 낙농만이 축산업등록제를 반대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하는데에 상당한 아쉬움을 남겨 만들었다.

축산업등록제 대응활동 성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축산업등록제는 도입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법이 목적하는 취지대로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한 결과 [표1]과 같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농가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회내 축산업등록제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이용우 충남도지회장)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으며, 농림부 정책당국자와의 여러차례의 교섭을 가진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몇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하였다.

표1. 축산업등록제 대응활동 성과

구 분	정 초	개 선
등록대상	○축사 100㎡이상	○'가축사육시설' 개념 도입 ○가축사육시설 면적 300㎡이상
건폐율	○시(市) : 20% ○군(郡) : 20~40%	○시(市) : 40% ○군(郡) : 40~60%
두당사육면적	○깔짚우사 : 12.8㎡/두 ○계류우사 : 8.7㎡/두 ○후리스톨 : 9.1㎡/두	○'07년부터 시행 ○고시로 운영하여 현장상황에 신축적 대응 ○관련규정 개정시 또는 농가 불편시 농가 협의 선행
처벌·과태료	○미등록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2년이하 징역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항	○법개정시 '미등록처벌조항' 완화 검토
시설·장비	○가축전염병 예방법, 오분법상에 명시된 시설·장비 구비	○등록시설장비 미규정
정보유출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반영 또는 관리지침 제정 방안 마련



첫째, 축산업등록제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둘째, 무허가 축사 문제는 타 관련부처(건교부, 환경부 등)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으며, 셋째, 건폐율 상향에 따른 별금 완화 및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시·도에 관련지침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축산업등록제의 대응활동 성과는 비단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다는 것 외에 협회 현안대응 과정에서 농가 여론수렴과 그에 따른 방침 결정, 도지회 및 낙우회와의 지역조직과의 연대활동 등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되며, 향후 현안대응활동에 교범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성과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단합하여 정부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만들어 낸 하나의 중요한 사례인 것이다.

향후 추진과제

협회에서는 축산업등록제 후속 대응활동으로

기존 “축산업등록제 대책 소위원회”를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로 전환하여, 무허가 축사 문제와 더불어 농업진흥 지역내 축사시설을 허용하는 농지법개정, 양분총량제, 가축사육두수총량제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타 축산·농민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며 또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군조례로 결정되는 건폐율 상

향, 건폐율 상향에 따른 소급추인시 벌금 완화, 가설건축물의 인정 범위 확대(썬라이트 축사 등)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지역(도지회·낙우회 등)에서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까지 시범사업인 친환경직불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료포 면적완화, 직불금 상향 등 의 보완조치, 축사시설을 농지로 인정하여 도시화에 따른 축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 도입예정인 양분총량제는 양분배출과 다지역에 대해 사육두수 감축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이미 농림부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협회와 사전 협의키로 한 바 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축산업등록제 대응활동을 거울 삼아 농가의견 수렴을 통해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 현안 대응활동에 있어서도 협회·도지회를 중심으로 한 농가 단결력이 다시금 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